

쉽게 익히는 이야기 '꼭' 학교 저작권

이 책을 만든신 분들

기획

문무상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책임연구원

황은기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연구원

집필

채명기 한국저작권위원회 교육연수원장

신명우 서울남청초등학교 교사

윤문

유연주 작가

편집디자인·인쇄

신성인쇄상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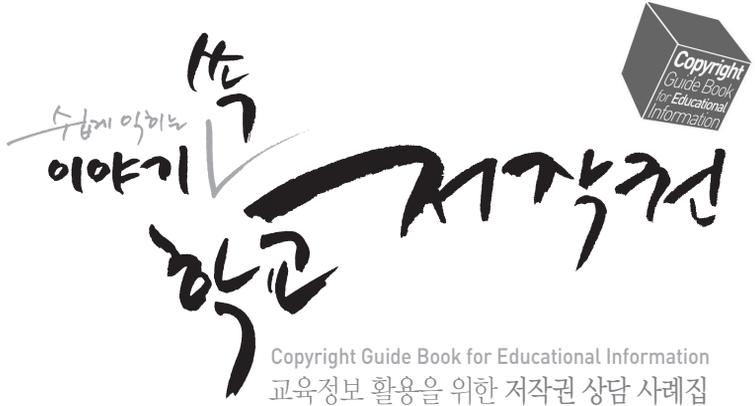
발행

2010년 12월 초판발행

2011년 6월 재판 인쇄

2013년 2월 1차 개정판 인쇄

본 교재는 에듀넷(www.edunet4u.net)을 통하여 다운 받을 수 있으며,
교육목적상 필요시 별도의 이용허락 없이 복사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학교, 저작권을 만나다

수업, 저작권과 소통하다

교사, 저작권과 친해지다

저작권의 맥을 잡아라

발간사

저작권은 21세기를 살아가는 힘입니다.

우리는 지금 인터넷이 보편화 되고 스마트 폰 등 발 빠른 각종 21세기형 미디어가 발전과 진화를 거듭하며 생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유례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저작물의 생산과 유통 방법은 다양해지고 창의적인 아이디어에 기반을 둔 고품질의 콘텐츠는 핵심 역량 산업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작물의 불법복제와 이로 말미암은 피해는 급증하고 누구든지 불법복제의 유혹을 쉽게 뿌리치기 어려운 환경입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지식기반사회의 출발점이며 문화산업을 일구는 토양은 무엇이겠습니까? 저작권입니다. 저작권은 과거 문화산업 발전의 발목을 잡는 장애물이었던 적도 있었지만, 오늘날 국민의 재산을 지키고 문화산업 등 21세기 산업을 성장시키는 원동력이자 국가경쟁력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작권 분쟁은 여전히 증가하고, 초·중등 학생은 자신의 어떠한 행동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잘못된 행동인지 인식하지 못한 채 저작권 분쟁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초·중등 학생의 저작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높이는 것이 어느 때보다 시급합니다.

발간사

특히, 어려운 법률용어를 가르치기 보다는 주변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저작권 침해 사례를 들어 초·중등 학생의 저작권 시야를 넓히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생을 지도하는 교사와 교육관계자 여러분의 저작권에 대한 학습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법률 전문가가 아닌 교사와 교육관계자 여러분이 저작권을 단시간에 숙지하기에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현장에서 한 번쯤은 고민해 보셨을 체험 사례를 중심으로 편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사례집을 제작하였습니다. 교육관계자 여러분에게 유익한 자료가 되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교육현장의 일선에 계신 교육관계자 여러분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하여 이 책을 집필하신 채명기 원장님과 신명우 선생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까다로운 저작권의 내용을 비교적 이해하기 쉽게, 잘 전달하기 위해 애쓰신 작가님과 검토진, 출판사 관계자 여러분께도 진심 어린 감사를 전합니다.

아무쪼록 교육의 현장에 계신 선생님은 물론 학생 모두, 저작권을 몰라서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일은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010년 12월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원장 천세영

천세영

Contents

학교,
1장 저작권을
만나다

- ep 01. 공익기관인 학교에서도 굳이 저작권을 지켜야 하나요? 12
- ep 02. 학교 음악방송도 저작권법 위반 맞아요? 20
- ep 03. 학교홈페이지에 실린 불법 저작물, 누가 책임져야 하죠? 30
- ep 04. 학교에 학생작품을 게시할 때, 누구의 허락을 받아요? 44
- ep 05. 일간지에 소개한 학교 기사를 제 홈페이지에 실어도 될까요? 52

초등,
2장 저작권을
스통보다

- ep 06. 초등학교 1학년생의 작품도 저작물인가요? 62
- ep 07. 학생 아이디어도 저작권 보호를 받습니까? 68
- ep 08. 교사의 수업과 강연도 저작물 맞죠? 76
- ep 09. 복사한 영어문제집으로 수업해도 될까요? 84
- ep 10. 저작권법상의 수업이란? 92
- ep 11. 수업자료를 제 홈페이지에 올려도 괜찮을까요? 100
- ep 12. 불법다운로드 자료로 수업해도 되나요? 108
- ep 13. 수업목적상 복제 프로그램 이용이 가능한가요? 116
- ep 14. 학생과 교사 사이에 무슨 초상권이요? 124
- ep 15. 저작권침해로 고소당한 아이를 구제할 방법은 없습니까? 132

교사, 저작권자의
친해자
3장

- ep 16. 제가 작성한 학교 시험문제가 왜 업무상 저작물이고
교육청이나 학교가 저작권(권)자 인가요? 142
- ep 17. 원치 않는 공개수업, 녹화에서까지 어떻게 주의해야 할까요? 150
- ep 18. 끝끝내 저작권자를 못 찾으면 그냥 이용해도 되지 않아요? 156
- ep 19. 저작권침해를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죠? 164
- ep 20. 공문에 불법 저작물이 있다면 누구 책임인가요? 172
- ep 21. 영화관에서 개인적으로 촬영한 영상을 수업시간에
이용하려고 합니다. 괜찮을까요? 180

저작권자의
행동 지침서
4장

- 하나. 나는 저작권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186
- 두울. 헛갈리는 저작권교육, 왜 필요할까? 189
- 세엣. 저작권을 교육하는 당신의 진짜 목적은? 192
- 네엣. 우리가 알아야 할 저작권교육의 알짜배기 콘텐츠 194
- 참고문헌 198

Copyright
Guide Book
Educational
Information

Copyright
Guide Book
for Educational
Information





KER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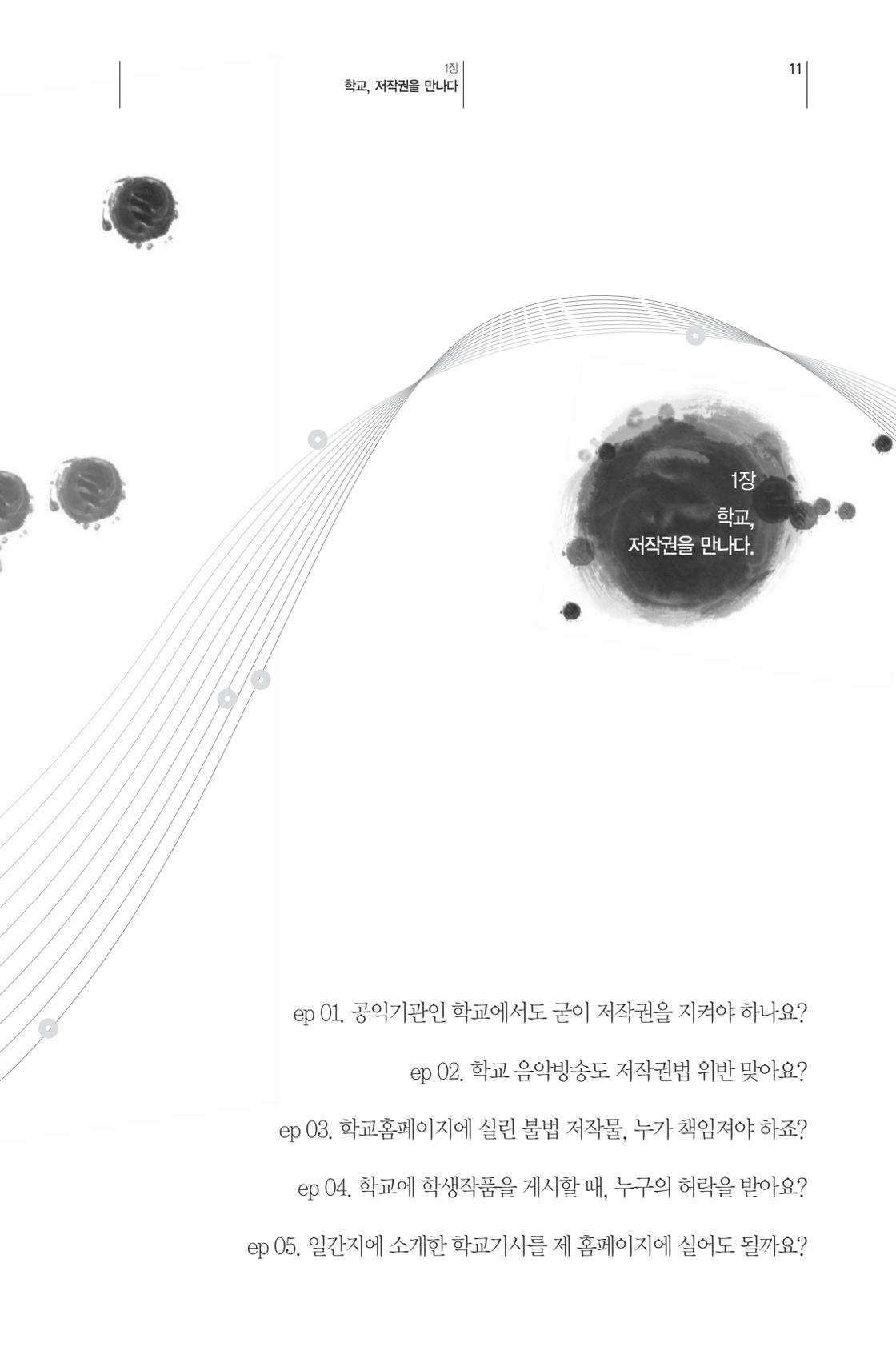
한국교육학술정보원
KOREA EDUCATION & RESEARCH INFORMATION SERVICE



한국저작권위원회
KOREA COPYRIGHT COMMISSION



학교,
저작권을
만나다



1장
학교,
저작권을 만나다.

- ep 01. 공익기관인 학교에서도 굳이 저작권을 지켜야 하나요?
- ep 02. 학교 음악방송도 저작권법 위반 맞아요?
- ep 03. 학교홈페이지에 실린 불법 저작물, 누가 책임져야 하죠?
- ep 04. 학교에 학생작품을 게시할 때, 누구의 허락을 받아야요?
- ep 05. 일간지에 소개한 학교기사를 제 홈페이지에 실어도 될까요?



공익기관인 학교에서도 저작권을 굳이 지켜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요즘 신문이나 방송 등 각종 매체에서 저작권 이야기를 참 많이 해서 저작권에 대해 접할 기회가 예전보다 훨씬 많아졌습니다. 또한, 한미 FTA(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 등의 국가 간 협정에서도 저작권 문제가 중요한 의제라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알음알음 주워듣기는 해도 워낙 경우가 다양한데다가 까다로운 법조문을 해석한 것이다 보니 사실 일반인이 이해하기에는 쉽지 않고, 기억에 잘 남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정작 제가 제대로 알고 있는 내용은 거의 없는 편이어서 이렇게 질문을 드리게 됐습니다.

과거와 달리 저작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저작권 보호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는 모습을 보면서 참 반갑고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교사의 한 사람으로서 답답하고 걱정스럽기도 한 게 솔직한 저의 심정입니다. 비영리 기관이면서 인재를 양성하는 학교에서까지도 저작권을 굳이 지켜야 할까요? 제 생각엔 조금 무리가 아닐까 싶은데요. 왜냐하면, 인류가 축적한 저작물을 활용한 학습이 학교 수업의 대부분이다 보니 그러한 저작물을 일일이 허락을 받아가면서 이용하는 건 대단히 불편하고 비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음악, 그림, 사진 등은 학교행사에서도 거의 빠짐없이 활용되는 저작물인데요, 사전에 전부 허락을 받고 이용해야 한다면 글썽요, 교사로서 생각할 때 그것은 수업을 하지 말라는 것과 같습니다. 설사 허락을 받을 수 있다고 해도 교사가 그 많은 저작권료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저작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학교는 공익을 위한 기관이며, 교육기관입니다. 저작권을 지키기도 어렵고 굳이 지켜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보다 답답하고 궁금한 것이 많은 한 사람으로서 이 기회를 통해 답변을 이해하기 쉽고 명쾌하게 들려주셨으면 합니다.



네, 학교에서도 '저작권'을 지켜야합니다.

선생님의 의견 잘 들었습니다.

학교는 교육을 목적으로 한 기관으로 공중(公衆)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기 때문에 저작권법도 이를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 감사드립니다. 현실적으로 학교 수업과 교내 행사에 이용되는 저작물을 사전에 모두 허락 받는다는 건 말씀하신 것처럼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저희 또한 그 의견에 공감합니다. 하지만, 설사 그렇다고 해도 학교에서 저작권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저작권법이 왜, 누구를 위해 존재할까요? 먼저 이 질문부터 짚고, 이해한 후 답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선생님은 저작권법이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겠지요. 잘 아시는 것처럼 저작권법은 일반적으로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이용자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여 문화와 관련 산업의 향상 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법입니다. 만일 저작자의 권리인 저작권을 지켜주지 않는다면 과연 누가 힘들여 창작하려고 할까요? 저작권법은 이러한 저작자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보호 조치입니다. 저작자가 저작물을 창작해 낸 덕분에 우리가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즐길 수 있겠죠.

그런데 저작권법이 단순히 저작자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은 공익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저작권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법이기도 한 셈이죠.

저작권법에 따르면, 교과용 도서에 공표된 저작물을 실을 수도 있고 수업목적을 위하여 복제·배포·공연·방송·전송할 수도 있습니다. 학교교육 목적을 위해서도 저작권은 제한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공익을 위해 저작권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지 무시해도 된다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학교라고 해서 모든 저작물을 마음대로 이용할 수는 없다는 의미입니다. 다음 사례를 보면서 학교에서 허용되는 저작물 이용의 범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관련사례

수업목적상 저작권이 제한된다는 데 무슨 뜻이죠?



**교육 등 공익목적을 위해서
저작자의 권리를 제한한다는 의미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작권은 저작자의 권리이기는 하지만 교육 등 공익목적을 위한 경우라면 학교에서 어느 정도 제한을 받습니다. 학교는 수업목적상 필요한 경우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 배포, 공연, 방송, 전송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따라 저작물의 전부를 이용할 수도 있고요. 수업시간에 시(詩)를 가르친다고 할 때, 시의 일부 혹은 짧은 시의 경우 그 전부를 이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장편소설을 지도하기 위한 경우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저작권자의 이익을 크게 침해하는 것이어서 소설 전체를 복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더불어 ‘수업목적상’ 저작권이 제한된다는 점에 주의하시기를 거듭 당부 드립니다. 과거 저작권법에서는 교육목적상 저작권을 제한했지만, 이 ‘교육목적’이란 용어가 지나치게 넓게 해석되어 저작권자 및 권리단체의 반발이 있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해결책으로 교육목적에

서 ‘수업’ 목적으로 범위를 좁히는 방향으로 법 조항을 일부 수정해서 이전보다 저작권의 보호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수업목적’이란 직접적인 교수행위를 뜻하기 때문에 교육목적상 필요한 환경구성, 학교행사 등을 위해 저작물을 이용할 때에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만 합니다. 이제 확실히 이해가 되셨는지요?



관련사례

교과서는 당연히 저작권이 없지요?

**아니오, 교과서는
저작물로서 저작권이 있습니다.**

흔히 ‘교과서에 왜 저작권? 교과서는 당연히 저작권이 없지.’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뜻밖에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교과서도 엄연히 하나의 저작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고 있음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이렇게 선생님이나 많은 사람이 교과서에 실린 것들이 저작물이 아니고 당연히 저작권이 없다고 오해하는 이유는 아마도 교과서가 국가에 의해서, 그리고 교육목적상 집필되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나 만일 이런 경우라면 어떨까요? 선생님께서 교과서의 집필진으로서 교과서를 집필하신 분이라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관련사례

Example

1-2

경우, 선생님이 애써 작업한 콘텐츠에 대해서 만일 국가가 법적으로 보호해 주지 않는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과연 새로운 내용을 생산해 내거나 창작하려는 열의를 보일 수 있을까요?

더불어 교과서에 게시된 글이나 자료를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이용하는 때도 있는데, 이걸 분명한 저작권법 위반입니다. 저작권법 제25조 1항에 따르면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 학교의 교육 목적상 필요한 교과용 도서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게재할 수 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공표된 저작물을 ‘교과서에’, ‘교육목적상’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지, 교과서의 자료를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교과서는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으며, 교과서 안에 있는 글이나 사진 등의 자료를 허락 없이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입니다.

참조조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저작권법

1.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제2조,

제25조 _

제25조(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25

①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의 교육 목적상 필요한 교과용 도서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게재할 수 있다.

②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

참조조문

저작권법

제25조 _

교육법」에 따른 학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 및 이들 교육기관의 수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교육지원기관은 그 수업 또는 지원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배포·공연·방송 또는 전송할 수 있다. 다만,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저작물의 전부를 이용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부를 이용할 수 있다.

25

저작권

| 확인하기 1 |

1. 다음 중 저작권법의 의의가 아닌 것은?

- ① 저작권자의 보호
- ② 저작권자의 이익 극대화
- ③ 문화 및 관련 산업의 발전
- ④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도모

2. 다음 중 저작권이 제한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 ① 교과서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게재할 수 있다.
- ② 학교 수업목적을 위해서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 ③ 교육목적상 필요한 경우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 ④ 학교수업 목적을 위하여 짧은 시, 그림, 사진은 그 전부를 이용할 수 있다.

정답 1. ② 2. ③



학교 음악방송도 저작권법 위반 맞아요?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상담 창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주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아서 그분들을 대신하여 질문 드립니다. 간단히 여쭙어 학교 음악방송이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것인가요?

학교마다 아침이나 점심시간 등의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서 건전가요나 클래식 음악을 방송하곤 합니다. 동요 등의 음악방송을 하는 초등학교가 많다고 들었고요. 우리 학교에서도 아침과 점심, 하루에 두 차례 학생들에게 음악을 틀어주고 있는데요, 학생은 물론 교사와 학부모도 매우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저작권 문제가 대두하면서 교사로서 걱정이 생겼습니다.

학교에서 음악을 틀어주는 것이 혹시 저작권법 위반인가요? 꼭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문제인가요? 괜한 우려인 건지, 아니면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야 하는 문제인지 자꾸 신경이 쓰입니다. 사실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게 된 이유는 어떤 선생님의 건의 때문이었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학교 음악방송이 저작권 문제에 걸리니까 그동안 해왔던 하루 두 차례의 방송을 모두 그만두자고 하셨거든요. 그분의 말씀처럼 이 경우, 제 생각에도 저작권의 문제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 사실 음반제작사나 음악가에게 일일이 허락을 받고 방송을 하는 것은 아니므로 찜찜한 부분이 없지 않았습니다. 누구누구는 저작권법 위반이 아니라고 하고, 몇몇 선생님은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통에 교사 간에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결국, 어느 편이 옳은지 결론이 나지 않아서 명쾌한 답변을 듣고 싶어 이렇게 저작권 상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아침이나 점심때, 학교 방송 시간에 음악을 사용하는 것이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것일까요? 제 생각으로는 저작권법 위반 같은데요. 만약 저작권법 위반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학생들에게 음악방송을 돈을 받고 하지 않는 한 저작권법 위반이 아닙니다.

우선 학교에서 아침이나 점심시간에 음악방송을 하는 것은 저작권법 상 공연에 해당하며, 이는 저작권법 위반이 아닙니다. 저작권법 제29조 1항에 따르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 또는 방송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음악 등의 저작물을 이용하거나 공연에 대하여 반대 급부를 받는다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함은 당연합니다. 다만, 실연자에게 통상의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또 영리목적 없거나 공연에 대하여 반대 급부를 받지 않더라도 출연자(가수, 사회자, 연주자 등)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음악 등의 저작물을 공연하는 것에 대하여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학교에서는 영리 목적으로 음악 방송을 하거나 학생들에게 돈을 받고

음악 방송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학교에서 음악 방송하는 것은 저작권 위반이 아니라는 얘기죠.

또한, 2항에서는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판매용 음반 또는 판매용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을 꼼꼼히 살펴보면 매우 재미있습니다. 청중이나 관중에게서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으면 제3자에게 즉 특정회사나 단체의 후원을 받아서 판매용 음반이나 판매용 영상저작물을 공연하더라도 저작권 침해가 아닙니다. 물론 이 경우 판매용 음반이나 판매용 영상저작물은 불법적으로 다운로드 받거나 복제된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적법하게 제작되어 시중에 유통되는 것이어야 한다는 이야기죠. 저작권법 제29조 2항이 1항과 유사해서 혼동할 수도 있지만, 2항은 판매용 음반과 판매용 영상저작물에 대한 내용입니다.

참고로 청중이나 관중에게서 반대급부를 받지 않더라도 판매용 음반이나 판매용 영상저작물을 공연하지 못하는 몇몇 시설이 있습니다. 에어로빅장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고 비용을 지급해야만 음반을 이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예에 해당하는데요, 에어로빅을 강습받을 때 만일 음악이 없다면 어떨까요? 흔히 비유로 이야기하듯 앙꼬 없는 찐빵이 아닐까요? 따라서 이러한 장소와 시설에서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고 음반을 이용해야 합니다.

결국 학교는 이러한 장소나 시설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아침이나 점심시간에 음악방송을 하더라도 무방합니다. 단 음악CD나 음악파일은 시중에서 정상적으로 유통되는 시판용이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 참조)

관련사례

연예인의 행사에서 저작권어떻게 처리해야 하죠?



**연예인에게 행사 출연료를 지급하는 경우,
음악 저작권자에게도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얻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청중이나 관중에게서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을 때에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음악을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행사에 연예인을 부를 경우라면 사정은 달라지겠지요?

학교행사에서 연예인을 부를 때, 비록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도 않고 사람들로부터 어떠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다고 해도, 해당 연예인에게 출연료 등 소정의 비용을 지급하게 됩니다. 만일 청중에게서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다고 해도 해당 연예인에게 출연료를 주고 음악 저작권자에게는 저작권사용료를 주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이진 누가 봐도 불공평한 처사입니다. 물론 연예인은 물론이고 저작권자에게까지 값을 치른다면 아무 문제가 없겠지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사실 이 과정에서 저작권법 위반이 일어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따라서 연예인에게 행사 출연료를 지급하는 경우라면 마땅히 관련 음악의 저작권자에게도 이용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 만약 연예인이 무료로 공연한다면 저작권은 문제가 안 됩니다.



관련사례

학교 음악방송에서 최신가요를 틀어도 될까요?

판매용 CD 등을 구입해서 틀어주어도 됩니다.

“학교에서 음악방송을 해도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는 이미 함께 살펴보았지요? 이번에는 학교에서 방송을 통해 ‘최신가요’를 틀어주어도 되는지에 대한 문제를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가능합니다.

관련사례

Example
2-2

학교 음악방송에서 최신가요를 틀어 주어도 됩니다. 물론 최신가요의 음원인 CD나 테이프 등은 '정당한' 절차를 거쳐 구매하, '판매용' 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판매용 음반을 틀더라도 저작권료를 지급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골프장과 같은 체육시설이나 대형마트, 백화점 등입니다. 혹시 야구 좋아하시나요? 야구 경기에서도 많은 음악저작물이 이용되는 것 아시죠? 야구장도 저작권료를 내야 하는 상황에 해당하기에 KBO(Korea Baseball Organization, 한국 야구 위원회)는 저작권료로 매년 일정한 금액을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주고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29조와 저작권법시행령 제11조를 참조하시면 이와 관련된 더욱 자세한 내용을 아실 수 있습니다.

참조조문	저작권법 제29조(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	29
저작권법 제29조,	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 또는 방송할 수 있다. 다만, 실연자에게 통상의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 _	②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판매용 음반 또는 판매용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판매용 음반 등에 의한 공연의 예외)	11
	법 제29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연을 말한다.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에 따른 영업소에서 하는 다음 각 목의 공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다목에 따른 단란주점과 같은 호 라목에 따른 유흥주점에서 하는 공연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영업소에서 하는 공연으로서 음악 또는 영상 저작물을 감상하는 설비를 갖추고 음악이나 영상저작물을 감상하게 하는 것을 영업의 주요 내용의 일부로 하는 공연 	
	2.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경마장, 「경륜·경정법」에 따른 경륜장 또는 경정장에서 하는 공연	
	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골프장·스키장·에어로빅장·무도장·무도학원 또는 전문체육시설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체육시설에서 하는 공연	

참조조문

저작권법

시행령

제1조 _

4. 「항공법」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용 여객용 항공기, 「해운법」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용 선박 또는 「철도사업법」에 따른 여객용 열차에서 하는 공연 11
5.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휴양콘도미니엄·카지노 또는 유원시설에서 하는 공연
6.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대형마트·전문점·백화점 또는 쇼핑센터에서 하는 공연
7.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 숙박업 및 같은 항 제3호 나목의 목욕장에서 영상저작물을 감상하게 하기 위한 설비를 갖추고 하는 판매용 영상저작물의 공연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서 영상저작물을 감상하게 하기 위한 설비를 갖추고 발행일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판매용 영상저작물을 재생하는 형태의 공연
- 가. 국가·지방자치단체(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의 청사 및 그 부속시설
 - 나.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
 - 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미술관
 - 라.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 마.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른 지방문화원
 - 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관
 - 사. 「여성발전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성관련 시설
 - 아.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제1호 가목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 자.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른 공공시설 중 시·군·구민회관

저작권자에게

| 확인하기 2 |

1. 판매용 음반의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더라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음악방송을 할 때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하는 곳을 모두 고르시오.
여기서 음악방송은 저작권법상 공연에 해당합니다.
 - ① 교실
 - ② 학교
 - ③ 야구장
 - ④ 백화점
2. 학교행사에 연예인을 초청하여 소정의 출연료를 지급할 때, 이는 왜 저작권법 위반인지 설명해 보시오.



학교 홈페이지에 실린 불법 저작물, 누가 책임져야 하죠?



안녕하세요?

저는 학교에서 홈페이지 관련 업무를 맡은 정보부장으로서 저작권과 관련해서 할 얘기가 참 많습니다. 얼마 전엔 학교홈페이지에 올라온 캐릭터 사진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생각다 못해 저작권 상담을 의뢰하게 되었어요. 사건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2010년 8월 12일, 우리 학교 한 학생이 학교 홈페이지에 누구나 알만한

유명 캐릭터인 ○○를 학교 게시판에 올린 것이 발단이 되었습니다.

캐릭터의 저작권자는 2010년 10월 11일, 이 사실을 알고 게시판에서 캐릭터와 함께 관련 내용의 삭제를 요구했습니다. 더불어 학교 측에 책임을 물었지요. 학교에서는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캐릭터와 함께 문제의 글을 즉시 삭제했습니다. 차후 이러한 문제가 또다시 생기지 않도록 안전망 설치 차원에서 홈페이지와 가정통신문으로 저작권 관련 안내도 하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또한, 정보부장으로서는 학교 홈페이지 담당인 제가 해당 저작권자에게 전화로 사과의 뜻을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저작권자는 학교의 서면 사과와 함께 그에 합당한 금전적 손해배상을 청구해 왔습니다.

이 경우에는 저작권법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서면 사과와 손해배상을 한 후에도 이 문제로 말미암아 저나 교장 선생님, 그리고 교감 선생님까지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담당자로서 필요한 조치를 모두 취했다고 생각했는데도 해당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 저로서는 좀 억울한 것 같습니다. 아닌가요?



저작권 침해 사실을 알게 된 후 침해행위 중단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셨다면
책임을 면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선생님, 아무리 신경을 써도 틈새가 있기 마련인 불법 저작물 때문에 마음고생이 많으셨죠? 저작물 관리가 쉽지 않으실 거라는 점,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하신 고민은 학교홈페이지 관리자나 정보부장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가졌을 법한 문제거든요. 학교 구성원의 방문자 수와 이용 횟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홈페이지가 활성화되고, 또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학교와 학생 그리고 학부모 간에 의사소통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반가운 소식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언어폭력, 비방 등의 문제 또한 지나칠 수 없는 상황이지요. 특히 저작권 문제는 법적 책임이 따르는 문제라서 학교마다 상담의뢰 건수가 제법 많습니다.

제가 지금 드릴 답변이 선생님의 고민을 조금이라도 덜어 드리길 희망해 봅니다. 학교홈페이지에 올라온 불법저작물의 경우, 선생님이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따라 그 책임이 달라집니다. 선생님은 캐릭터 저작권자에게서 요청을 받은 직후 해당 저작물과 관련 글을 삭제하고, 차후 저작권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조치를 하셨습니다. 저작권법 제103조 제2항 내지 제5항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권자의 요청을 받고 즉시 불법 저작물을 삭제한 후 그 사실을 권리자에게 알리고, 저작권자의 침해 중단 등을 요구받을 자(성명 및 소속부서명, 전화번호·팩스번호 및 전자우편주소, 우편물 수령주소)를 홈페이지에 공지하였다면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책임을 지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불법 저작물에 대한 선생님의 대응은 대체로 적절하셨습니다. 따라서 학교 홈페이지에 올라온 불법 저작물의 저작권자가 삭제 요청을 할 경우 그 삭제 요청을 받을 수 있는 담당자를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다면 선생님과 학교 모두 저작권 관련 책임을 면할 것 같습니다. 그럼 저작권침해에 따른 저작권자의 재산적 피해는 누가 책임져야 할까요? 만약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선생님과 학교의 대표자인 교장선생님이 책임을 져야 하겠지만 저작권자의 삭제 요청을 받고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했으므로 선생님이나 교장선생님은 저작권자의 재산적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면제 받습니다.

그런데요, 선생님. 그 캐릭터의 저작권자가 정당한 권리자인지 확인은 하셨나요? 만약 그 저작권자에게 정당한 권리가 없는데도 그러한 요구를 해왔다면 이것은 위법사항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과거 2009년에는 저작권이 없는데도 허위로 저작물을 등록하고 이 저작물을 이용해서 학교에 돈을 요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그 사람의 사기행각이 드러나서 사건이 확대되지 않았지만, 법을 악용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관련사례



학교도 온라인서비스제공자 (OSP)인가요?

네, 학교도 OSP로서
동일한 책임이 있습니다.

선생님처럼 학교도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인지 궁금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질문을 자주 받고 있거든요. 이것은 학교 온라인서비스 제공자로서 책임과 의무를 져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그렇습니다.” 학교도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서 그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서 학교는 어떤 책임과 의무를 지는 걸까요?

우선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어떤 사람을 말하는지부터 살펴볼까요? 즉 온라인서비스제공자(Online Service Provider)는 이용자가 선택

한 저작물등을 그 내용의 수정없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달하기 위하여 송신하거나 경로를 지정하거나 연결을 제공하는 사람, 또는 이용자들이 정보통신망에 접속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저작물등을 복제·전송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그를 위한 설비를 제공하거나 운영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러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4가지 유형이 있는데, 인터넷 접속서비스를 하는 사람, 캐싱⁹⁾ 서비스를 하는 사람, 저장서비스를 하는 사람, 정보검색도구서비스를 하는 사람입니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4가지 유형별 특징은 아래 표²⁾와 같습니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유형	기술적 특징
인터넷접속서비스	네트워크와 네트워크 사이에 통신을 하기 위해서 서버까지 경로를 설정하고 이를 연결해 주는 서비스(예,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캐싱서비스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일정한 콘텐츠를 중앙서버와 별도로 구축된 캐시서버에 자동적으로 임시 저장하여 이용자가 캐시서버를 통해 해당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저장서비스	홈페이지, 카페, 블로그, 웹하드 등과 같이 일정한 자료를 하드디스크나 서버에 저장·사용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예, 홈페이지, 미니홈피, 카페, 블로그 등 중 게시판이나 자료실 등을 운영하는 곳) ⁹⁾
정보검색도구서비스	인터넷에서 정보를 검색하여 정보를 제공하여 주는 서비스(예, 네이버, 다음, 구글 등의 검색 서비스)

관련사례

Example

3-1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4가지 유형별로 책임과 의무도 조금씩 다릅니다. 각자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면 이용자가 불법 저작물을 온라인 서비스제공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공간에 올리는 것에 대하여 어떤 책임도 지지않습니다.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학교는 저장서비스를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다음과 같은 7가지 책임과 의무, 즉 ①불법 저작물의 송신을 개시하지 않는 경우, ②불법 저작물과 그 수신자를 선택하지 않는 경우, ③권리를 반복적으로 침해하는 사람의 계정(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를 식별·관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이용권한 계좌를 말함)을 해지하는 방침을 채택하고 합리적으로 이행하는 경우, ④저작물 등을 식별하고 보호하기 위한 기술조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건(저작권자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견일치에 따라 개방적이고 자발적으로 정하여 질 것,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이용이 가능할 것,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1)캐싱이란 정보처리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자주 이용되는 디지털 정보를 캐시(cache)라 불리는 저장 공간에 임시적으로 저장한 후에 이를 다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정보의 원래의 출처로 다시 가지 않고 임시 저장된 정보를 활용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저작권위원회, 「한·EU FTA 이해 개정 저작권법 해설」, 2011년 7월 8일 15쪽.
OSP의 캐싱은 이용자가 자신의 컴퓨터상에서 저작물을 보거나 읽을 때 해당 저작물이 주기억장치(RAM)에 저장되는 것과는 다르다.

2)문화체육관광부 & 한국저작권위원회, 「한·EU FTA 이해 개정 저작권법 해설」, 2011년 7월 8일 14~15쪽.

3)저장서비스의 기술적 특징은 내용을 쉽게 전달하기 위하여 필자가 부분적으로 수정 보완하였다.

관련사례

Example

3-1

상당한 비용을 부과하거나 온라인서비스 제공 관련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시스템 또는 정보통신망에 실질적인 부담을 주지 아니할 것을 충족하는 표준적인 기술조치를 권리자가 이용할 때에는 그것을 수용하고 방해하지 않는 경우, ⑤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침해행위를 통제할 권한과 능력이 있을 때에는 그 침해행위로부터 직접적인 금전적 이익을 얻지 않는 경우, ⑥침해를 실제로 알게 되거나 저작권자가 불법 저작물의 삭제·중단 등을 요구함에 따라, 침해가 명백하다는 사실이나 정황을 알게 된 때에 즉시 불법 저작물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킨 경우, ⑦불법 저작물의 삭제·중단 등의 요구를 받을 자를 지정하여 홈페이지 등에 공지한 경우에 이용자가 홈페이지 등에 올린 불법 저작물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학교게시판을 공개하고 저작물을 올리거나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교홈페이지라면 앞에서 말한 7가지 책임과 의무를 모두 수행해야 합니다.

관련사례



학교가 저작권을 침해한 학생의 계정을 정지해도 되나요?

**네, 학교는
학생의 계정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학교홈페이지를 관리하다 보면 저작권을 침해하는 학생이 더러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가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솔직히 그때마다 다른 학생들을 위해서 침해한 학생의 계정을 정지해야 하는 건 아닌지 선생님으로서 고민이 되실 겁니다. 계정의 정지는 사실 침해한 학생을 지도하고 선량한 학생의 보호와 더 큰 문제를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필요한 조치이겠지요. 그렇다면 학교에서 문제 학생의 계정을 마음대로 정지해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걸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는 4가지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중 저장서비스를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다른 사람이 올린 불법 저작물에 대하여 책임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7가지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데, 그 중 하나가 “권리를 반복적으로 침해하는 사람의 계정(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를 식별·관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이용권한 계좌를 말함)을 해지하는 방침을 채택하고 합리적으로 이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학교가 홈페이지에 불법 저작물을 올린 학생의 계정을 해지하는 것은 저장서비스를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서 의무입니다.

선생님은 학교 홈페이지에 불법 저작물을 올린 학생의 계정을 정지하거나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학생의 계정을 정지한다면 학생은 마음을 다칠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교육을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참조조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저작권법 제2조_	<p>30. “온라인서비스제공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p> <p>가. 이용자가 선택한 저작물등을 그 내용의 수정 없이 이용자가 지정한 지점 사이에서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통하여 전달하기 위하여 송신하거나 경로를 지정하거나 연결을 제공하는 자</p> <p>나. 이용자들이 정보통신망에 접속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저작물등을 복제·전송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그를 위한 설비를 제공 또는 운영하는 자</p>	
저작권법 제102조, 제103조_	<p>제102조(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p> <p>①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와 관련하여,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가 침해되더라도 그 호의 분류에 따라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침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개정 2011. 6.30></p> <p>1. 내용의 수정없이 저작물등을 송신하거나 경로를 지정하거나 연결을 제공하는 행위 또는 그 과정에서 저작물등을 그 송신을 위하여 합리적으로 필요한 기간 내에서 자동적·중개적·일시적으로 저장하는 행위</p> <p>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물등의 송신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p> <p>나.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물등이나 그 수신자를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p> <p>다.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반복적으로 침해하는 자의 계정(온라인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를 식별·관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이용권한 계좌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제103조의2, 제133조의3에서 같다)을 해지하는 방침을 채택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이행한 경우</p> <p>라. 저작물등을 식별하고 보호하기 위한 기술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표준적인 기술조치를 권리자가 이용한 때에는 이를 수용하고 방해하지 아니한 경우</p> <p>2. 서비스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송신된 저작물등을 후속 이용자들이 효율적으로 접근하거나 수신했을 수 있게 할 목적으로 그 저작물등을 자동적·중개적·일시적으로 저장하는 행위</p>	102

참조조문

가. 제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저작권법

제102조

나.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그 저작물등을 수정하지 아니한 경우

다. 제공되는 저작물등에 접근하기 위한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을 지킨 이용자에게만 임시저장된 저작물등의 접근을 허용한 경우

라. 저작물등을 복제·전송하는 자(이하 “복제·전송자”라 한다)가 명시한, 컴퓨터나 정보통신망에 대하여 그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데이터통신규약에 따른 저작물등의 현행화에 관한 규칙을 지킨 경우. 다만, 복제·전송자가 그러한 저장을 불합리하게 제한할 목적으로 현행화에 관한 규칙을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저작물등이 있는 본래의 사이트에서 그 저작물등의 이용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적용한, 그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기술의 사용을 방해하지 아니한 경우

바. 제103조 제1항에 따른 복제·전송의 중단요구를 받은 경우, 본래의 사이트에서 그 저작물등이 삭제되었거나 접근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법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그 저작물등을 삭제하거나 접근할 수 없게 하도록 명령을 내린 사실을 실제로 알게 된 경우에 그 저작물등을 즉시 삭제하거나 접근할 수 없게 한 경우

2. 복제·전송자의 요청에 따라 저작물등을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컴퓨터에 저장하는 행위

가. 제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나.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침해행위를 통제할 권한과 능력이 있을 때에는 그 침해행위로부터 직접적인 금전적 이익을 얻지 아니한 경우

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침해를 실제로 알게 되거나 제103조 제1항에 따른 복제·전송의 중단요구등을 통하여 침해가 명백하다는 사실 또는 정황을 알게 된 때에 즉시 그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킨 경우

라. 제103조제4항에 따라 복제·전송의 중단요구 등을 받을 자를 지정하여 공지한 경우

참조조문

4. 정보검색도구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정보통신망상 저작물등의 위치를 알 수 있게 하거나 연결하는 행위
- 가. 제1호 가목의 요건을 갖춘 경우
- 나. 제3호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요건을 갖춘 경우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으로 인한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개정 2011.6.30>
- ③ 제1항에 따른 책임 제한과 관련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자신의 서비스 안에서 침해행위가 일어나는지를 모니터링하거나 그 침해행위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조사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저작권법

제103조(복제·전송의 중단)

제103조_

- ① 온라인서비스제공자(제102조제1항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의 서비스를 이용한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에 따라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자신의 권리가 침해됨을 주장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권리 주장자"라 한다)는 그 사실을 소명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그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킬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1.6.30>
- ②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복제·전송의 중단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그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키고 권리주장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10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그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자에게도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복제·전송자가 자신의 복제·전송이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것임을 소명하여 그 복제·전송의 재개를 요구하는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재개요구사실 및 재개예정일을 권리주장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고 그 예정일에 복제·전송을 재개시켜야 한다. 다만, 권리 주장자가 복제·전송자의 침해행위에 대하여 소를 제기한 사실을 재개예정일 전에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④ 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복제·전송의 중단 및 그 재개의 요구를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수령인"이라 한다)를 지정하여 자신의 설비 또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공지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저작권법

제103조

- ⑤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제4항에 따른 공지를 하고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그 저작물 등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키거나 재개시킨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에 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및 복제·전송자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면제한다. 다만, 이 항의 규정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물 등의 복제·전송으로 인하여 그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가 침해된다는 사실을 안 때부터 제1항에 따른 중단을 요구받기 전까지 발생한 책임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⑥ 정당한 권리 없이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그 저작물 등의 복제·전송의 중단이나 재개를 요구하는 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⑦ 제1항 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명, 중단, 통보, 복제·전송의 재개, 수령인의 지정 및 공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103

그날의 이야기

| 확인하기 3 |

1. 다음에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Online Service Provider)가 아닌 것은?

- ① 다음(DAUM)
- ② 네이버(NAVER)
- ③ 학교홈페이지
- ④ 폐쇄형 홈페이지

2. 학교 홈페이지에 불법저작물이 발견되었을 때, 가장 신속히 해야 할 조치는?

- ① 저작권법 위반 자료의 삭제
- ② 저작권법 위반 사실의 통보
- ③ 해당 저작물을 올린 학생의 계정정지
- ④ 해당 저작물의 정당한 권리자 확인

정답 1. ④ 2. ①



학교에 학생작품을 게시할 때, 누구의 허락을 받아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지면으로나마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제가 상담받고 싶은 내용은 학교에 학생작품을 게시하려고 할 때 허락받을 필요가 있는지, 만일 허락을 받아야 한다면 누구에게 요청해야 하는지입니다.

그동안 학생들의 우수 산문이나 그림 등을 학교에 게시하는 데 학생 동이나 학부모 허락 없이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신

의 작품을 교내에 전시한다는 점에서 학생도 만족한 모습이었지요. 또, 게시되는 작품은 일반적으로 우수한 작품이어서 작품의 주인인 우수자에게는 상장이나 상품이 수여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저작권 관련 홍보자료를 보고서야 학생도 저작권자라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학생의 작품도 엄연히 ‘저작물’에 해당한다는 것이 이유였지요. 따라서 산문이나 그림 등 학생의 저작물을 허락 없이 게시한다면, 이 또한 저작권법 위반이라는 결론에도 달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그들에게 저작물에 상응하는 상장이나 상품을 지급했기 때문에 저작권법 위반이 아닐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학생과 학부모가 묵시적으로 합의했다는 생각도 들고요.

만일 학생의 작품을 현관이나 복도 등에 게시하기 위해서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누구의 허락을 받아야 할까요? 저작권자인 학생의 동의만 필요합니까? 아니면 미성년자이니까 학부모의 동의도 얻어야 합니까? 또한, 허락을 받을 때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요. 구체적인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학생이나 학부모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단, 원작품을 학교가 소유하거나 사용에 대한 안내 문구를 명시한 때는 자유롭게 게시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의뢰하신 상담 내용은 법과 현실 사이에 차이를 드러내는 상황에 해당합니다. 학생작품을 이야기하는 데 뜬금없이 법과 현실이라니, 조금 이상하게 들리시나요? 자, 그럼 이런 경우를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어느 학생의 글이 학교대표로 선정되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해당 학생과 학부모는 학교대표로 선정되면서 얻게 될 상장, 그리고 명예와 자부심 등을 기대하게 되겠지요? 그 학생의 글이 학교신문에 실린다고 해도 싫어하는 경우는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설사 이 과정에서 학부모와 학생의 동의가 없었다고 해도요. 사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고, 또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법적으로는 어떨까요? 우선 두 가지 측면에서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원작품을 학교가 소유하는 경우로 학교는 원작의 소유자로서 작품을 복도나 현관에 게시할 수 있습니다. 또 해당 공모전의 광고나 홍보문에 '우수작품은 나중에 출판물로 발행하거나 복도나 현관에 자유롭게 게시한다.'라는 문구가 들어간 경우

가 있습니다. 이 경우 학교는 우수작품을 출판하거나 복도, 현관에 자유롭게 게시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학교가 원작의 소유자도 아니고, 공모전의 광고문 등에 우수작으로 선정된 작품의 이용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 경우 우수작품을 출판하거나 복도 등에 게시하려면 학생 또는 학부모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예외는 있습니다. 공모전이 매년 이뤄지는 정기적인 행사이고, 우수작품을 복도 등에 게시하는 것이 관행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지죠. 이 사례에서라면 학교나 선생님은 최소한 그러한 정도의 이용에 대해서 학생이나 학부모의 묵시적인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우수작품을 알리기 위해서 복도나 현관에 일정 기간 게시하는 것은 일반적인 관행에 속하는 행위인 점을 고려할 때 학생이나 학부모의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만약 저작권법 위반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저작물 이용시에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경우라면 학생보다는 학부모에게서 이용허락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 하면 이용허락을 받는다는 것은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이고, 부모나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미성년자가 체결한 계약은 취소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학생 작품의 이용 문제를 사전에 해결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공모전을 치르기 전에 “학교에서는 재학생을 대상으로 000 공모전을 치를 예정이고, 공모전에서 입상한 학생들의 작품은 이러 이러한 방법으로 이용될 예정이오니 반대하시는 학부모님께서 그 의사를 표시하여 제출해 달라”는 가정통신문 등을 보내는 것입니다.

관련사례

학예대회 우수작의 저작권, 누구에게 귀속되나요?



대회 광고의 사전 안내에 따라 저작권재산권의 귀속이 달라집니다.

학예대회 우수작의 저작권재산권은 사전에 어떻게 안내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즉 학예대회를 광고하는 과정에서 우수작의 저작권재산권을 어떻게 하겠다는 안내에 따라 저작권재산권의 귀속 여부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교육청의 산문대회에서 “산문 대회의 결과 우수작의 저작권재산권은 교육청에 귀속된다.”라고 안내를 했다면 산문대회를 통해 발생하는 저작권재산권은 교육청에 귀속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구는 완전치 않습니다. 왜냐 하면 저작권재산권은 하나의 권리가 아니라, 복제권, 배포권, 대여권, 공연권, 전시권, 공중송신권, 2차적 저작물작성권 등 권리의 다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권리 중 어떤 권리가 양도되는지 알 수가 없어서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작권재산권 ‘일체’가 교육청에 귀속된다는 내용으로 문구를 명확하게 수정하는 쪽이 바람직합니다.

더불어 저작권법 제45조 2항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해서 이용할 권리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따라서 이 문구를 “산문 대회의 결과 우수작의 저작재산권 일체(2차적 저작물작성권 포함)는 교육청에 귀속된다.”라고 수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우수작품의 저작재산권을 무조건 양도받는 것이 최선인지에 대해서는 신중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작자에게서 해당 작품의 모든 재산을 뺏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수작품을 활용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포괄적인 이용허락을 받는 것이 계약의 공정성도 확보하고 주최자나 창작자 모두에게 최선의 선택일 수 있습니다.



관련사례

저작권 보호기간이 지난 작품은 마음대로 이용해도 되나요?

**네, 저작권 보호기간이
지난 작품은 자유롭게 이용 가능합니다.**

저작권은 영구히 보호되는 권리가 아닙니다. 창작이란 인류가 축적한 문화유산에 기초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일정 기간만 저작권이

관련사례

Example
4-2

보호됩니다. 만약 저작권이 영원히 보호된다면 창작행위가 일어날 수 있는 여지가 매우 줄어들겠지요? 원칙적으로 저작권은 저작자 생존기간과 그의 사망 후 50년까지 보호됩니다.

따라서 저작권 보호기간이 지난 작품은 자유롭게 이용해도 됩니다. 즉 학교에서 게시할 목적으로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한국과 유럽연합(EU)이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을 이행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이 2011년 6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11년 7월 1일부터 발효되었습니다. 이에따라 2년 후인 2013년 7월 1일부터 일반적인 저작권의 보호기간은 저작자의 생존기간과 사망후 70년이 됩니다. 기존보다 20년 늘어나게 됩니다.

참조조문

제39조(보호기간의 원칙)

39

저작권법

①저작재산권은 이 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

제39조,

②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

제45조 _

저작권법 부칙(제10807호, 2011. 6. 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발효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부터 제42조까지의 개정 규정은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발효한 후 2년이 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참조조문 제45조(저작권의 양도) 45

저작권법 제45조 _

① 저작재산권은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

②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제22조에 따른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는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프로그램의 경우 특약이 없는 한 2차적 저작물작성권도 함께 양도된 것으로 추정한다.

저작권법 제46조(저작물의 이용허락) 46

제46조 _

①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락에 의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할 수 없다.



| 확인하기 4 |

1. 학교 주관 산문대회 우수작의 저작재산권 일체를 귀속하기 위해, 가장 적절한 광고는?

- ① 우수작품의 저작권은 학교로 귀속됩니다.
- ② 우수작품의 저작재산권은 학교로 귀속됩니다.
- ③ 우수작품의 저작인격권은 학교로 귀속됩니다.
- ④ 우수작품의 저작재산권 일체(2차적 저작물작성권을 포함한다.)는 학교로 귀속됩니다.

2.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저작권 보호기간은(2013년 2월 현재)?

- ① 저작자 생존기간 + 30년
- ② 저작자 생존기간 + 40년
- ③ 저작자 생존기간 + 50년
- ④ 저작자 생존기간 + 70년

정답 1. ④ 2. ③



일간지에 소개한 학교 기사를 제 홈페이지에 실어도 될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로 저작권 문제로 억울한 일을 당해 상담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환경 글쓰기 대회가 있었습니다. 저희 학급과 학년에서도 글쓰기 대회를 치른 후 우수작품을 교육청에 제출했어요. 그 결과, 우리 학교 학생이 좋은 성적을 거두었고, 다시 교육청 대표로 뽑혀서 서울시 대회에 출

전했지요. 뜻밖에도 그 작품은 대상을 받았고, 기자는 그 학생을 인터뷰한 기사를 신문에 실었습니다.

저희는 정말 행복했고 교사로서 보람도 느꼈습니다. 이 기분을 다른 선생님들과 나누고 싶어서 별생각 없이, 제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그 학생이 수상한 글과 함께 신문사에서 취재한 내용을 홈페이지에 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 칭찬벽력인가요?

얼마 뒤 신문사에서 이런 제 행동이 저작권 위반이라며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 기사를 무단으로 이용했다는 이유였지요. 안 그래도 기가 막힌 데 한술 더 떠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해왔습니다.

신문은 단순히 사실을 전달하는 매체에 불과해서 저작권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잘 못 아는 건가요? 설사 저작권을 위반했다고 해도 신문사에서 이런 일로 합의금까지 요구하는 건 지나치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단순 사실 전달의 보도라면 무방합니다.

선생님께서 많이 억울해하는 상황이지군요.

우선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선생님 학교의 학생 작품이 서울시 대회에서 대상을 받게 되자 선생님께서 학생의 글과 함께 관련 신문 기사를 선생님 홈페이지에 올리셨습니다. 그랬더니 신문사에서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선생님께 합의금을 요구했다는 내용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신문기사가 저작물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판단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는 저작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반면, 신문기사에 논평, 해설 등 기자의 창작성과 노력이 있다면

저작물로 인정하기 때문이지요. 예를 들어, “어제 서울역에서 노숙자를 위한 자선공연이 있었다.”라는 기사가 있었다고 가정해 보죠. 이 기사는 사실의 전달일 뿐 창작성이 없습니다. 따라서 저작물로 인정받을 수 없겠지요? 만약 이러한 단순 사실 전달의 기사까지도 저작물로 인정한다면 새로운 신문기사나 글을 쓰는 일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최소한 기사가 저작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제 서울역에서는 추운 겨울 고통 받고 소외당하는 노숙자를 위하여 조그만 자선공연이 펼쳐졌고 사람들로 하여금 온정을 느끼게 하였다.”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저희에게 말씀하신 선생님의 상담 사연을 일반적인 사례를 들어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선생님께서 올린 기사가 단순히 학생의 수상 사실을 전달한 내용이라면 저작권 침해와 무관합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선생님이 이용한 신문 기사의 내용에 기자의 창작성이 녹아있다면 저작물로서 인정받기 때문에 저작권침해가 됩니다. 따라서 민사상, 형사상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신문사와 합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라고 하겠습니다.

관련사례

학교뉴스를 제작할 때 신문기사 내용을 이용해도 되나요?



네, 신문기사가 저작물을 보조하는 수준으로서,
출처를 밝히고 원본 그대로를 실는다면 이용에 문제가 없습니다.

“학교뉴스를 제작할 때 신문기사 내용을 이용해도 되나요?”라고 하신 질문이 조금 애매한 것 같네요. 이 질문에서 우선 학교뉴스를 어떠한 매체의 형태로 사용하겠다는 것인지가 불분명합니다. 예를 들어 제작하려는 형태가 신문인지요, 아니면 방송인가요? 둘째로 신문기사의 이용 범위가 부분인지 또는 전부인지를 알 수가 없네요. 셋째, 제작의 목적이 수업인지 수업 외인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칙론에 근거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사를 작성할 경우, 정당한 범위 내에서 그리고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한다면 다른 신문기사의 내용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범위 안에서라는 의미는 즉, 활용되는 내용이 제작하려는 저작물을 보조(從)하는 수준이어야 합니다. 또한, 이용되는 신문기사의 출처

처를 밝히고, 왜곡이나 수정을 하지 않는다면 공정한 관행에 합치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기사를 작성할 때 이러한 범위와 방법으로 신문 기사를 이용한다면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작권 침해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관련사례

학교신문에 실을 학생작품, 수정해도 될까요?

**아니오, 인용은 가능하지만
변형 등의 수정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앞의 5-1 사례에서 살펴본 것처럼,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해서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생님께서 학생의 작품을 인용하는 방식으로 학교신문에 올릴 수는 있지만, 수정해서 올리실 수는 없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저작물을 인용할 때 원 저작물을 번역하는 방식으로는 이용할 수 있지만, 변형해서 이용할 수는 없거든요. 따라서 학교신문에 올릴 학생작품을 수정하기 원하시면 선생님이 아닌, 원저작자인 학생 본인이 직접 수정하도록 일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참조조문	제7조(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7
저작권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제7조,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제28조 _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제35조의3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28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제35조의3(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35
	①제23조부터 제35조의2까지, 제101조의3부터 제101조의5까지의 경우 외에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②저작물 이용 행위가 제1항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영리성 또는 비영리성 등 이용의 목적 및 성격	
	2.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3.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4.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본조산설 2011. 12. 2]

그냥 이렇게

| 확인하기 5 |

1. 다음의 ()안에 들어갈 수 없는 말은?

공표된 저작물을 ()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 ① 보도
- ② 교육
- ③ 광고
- ④ 연구

2. 다음 중 저작물로서 보호받는 것은?

- ① 헌법
- ② 소설
- ③ 법률
- ④ 훈령